

<붙임1>

채무조정안(채권자용)

☐ 신청인 기본사항

성명	생년월일	연락처	주소

☐ 채무조정 사항

☐ 상환유예	☐ 만기연장	☐ 이자율 인하
☐ 원금 감면	☐ 이자 감면(이자)	☐ 이자 감면(연체이자)
☐ 상환방법 변경	☐ 변제금충당순서 변경	☐ 내부기준에 따른 조정사항

☐ 조정안

대출명	계약번호
(주)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	

조정	원금	비용	이자	연체이자	합계	이율
전						
후						

☐ 변제계획

상환 유예	☐ N ☐ 유예기간 : ☐ 유예이자 :	상환 방법	☐ 원리금균등 ☐ 원금균등 ☐ 만기일시상환 ☐ 기타()
상환기간 (상환개월)	년 월 일 ~ 년 월 일 (개월)	납입시작일	
매월 납입일	일	월납입액	

□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

-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.
 1. 3개월 이상*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*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
 2.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
 3.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4.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, 재산의 도피 및 은닉,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 5.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6. 채무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, 변제계획인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
 7. 채무자가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
 8.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

2025년 05월 29일

채권금융회사 : (주)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

(주)유노스프레스티지대부
2016-금감원-0055(대부업)
(홈페이지: www.unos.co.kr, 대표전화 : 02-351-3684)